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08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6. 2. 9  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이 일부 개정, 시행 [2005.1.27 법률 제7359호로 공포]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대책업무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### 가. 목적(안 제1조)

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
### 나. 위원회의 기능(안 제3조)

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

### 다. 위원회의 구성(안 제4조)
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
- 위원은 재난방재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 임원 또는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
-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난관련 업무주무담당이 된다.

### 라. 위원의 임기(안 제5조)

-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직기간,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해 연임가능
-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

## 마. 위원회의 회의(안 제7조)

-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 후 7일이내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

## 바. 의견의 청취(안 제8조)

-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,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,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 등을 참고하고,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「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」 ▷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의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05. 11. 10 ~ 11. 30(20일간), 별도의견없음

마. 기타 : 표준조례안 시달(시 방재과-5009, 2005.6.28)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연재난” 이라 함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.
2. “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” 라 함은 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 관내에서 태풍, 홍수, 호우, 폭설, 강풍, 풍랑 또는 해일, 지진,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,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3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「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관리지침」을 적용하여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한다.

**제4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.

③위원은 재난방재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 임원 또는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난관련업무주무 담당이 된다.

**제5조(위원의 임기 등)**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

②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위원회의 회의 등)** ①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 후 7일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8조(의견의 청취)**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,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,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 등을 참고하고,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**제9조(회의록 비치)**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, 장소, 출석위원과 관계인, 안건, 경과,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참고인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1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